

‘을사조약’ 체결과정의 재구성*

— 조약문 수정요구 문제의 재검토

안 승 민**

[초 록]

그동안의 을사조약체결과정에 대한 연구는 고종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대한제국의 최고결정권자인 고종의 언행을 바탕으로 조약의 효력을 규명하려는 기존 연구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의 현장에는 고종과 더불어 정부대신들이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그들은 조약문의 수정을 요구했는데,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일본 측에 매수된 결과로 간주했다. 본 논문은 조약문 수정요구문제에 대한 유력한 설명인 ‘이종협상안설’을 재검토함으로써 을사조약체결과정 가운데 대신들에 의해서 이뤄진 수정요구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육지원센터의 <학부 인문 아너스 프로그램> (Humanities Honors Program)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글은 2020년 1학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학부졸업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학사과정

주제어: 을사조약, 정부대신,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이종협상안설, 소급수정
1905 Convention Treaty (‘Eulsa Treaty’), Government Officials, *Records of Japanese Legation in Joseon*, ‘Ijonghyeopssangan Seol’, Retrospective Amendment

‘이종협상안설’은 을사조약체결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주한일본 공사관기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같은 제목의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사전에 두 개의 협상안을 준비했으며 정부대신들을 매수해서 협상과정에서 이를 발언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기반인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원본을 고려한다면, 두 문서가 서로 다른 협상안이라기보다 원본과 수정본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두 문서 간 상이한 필체, 독특한 수정방식, 그리고 다른 조약·협정들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수정본은 을사조약체결과정에서 존재한 조약문 수정요구가 소급하여 적용된 결과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을사조약체결 당시 협상과정의 막바지에 대신들로부터 수정요구가 제기되어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최종적인 조약문이 완성된 것으로 을사조약체결과정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1. 머리말

1905년 11월 18일 새벽,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은 표제도 없는 한 문서에 서명과 직인을 날인했다. 5장에 불과한 문서의 영향력은 막대했다. 을사조약으로 일컬어지는 이 조약의 체결로,¹⁾ 대한제국은 국권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외교권을 상실했다. 조약체결에 참여한 정부대신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고,²⁾ 일부 관료는 자

1) 조약에 대해서는 ‘을사조약’, ‘한일신협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 ‘한일협상조약’, ‘한일외교권위탁조약(안)’ 등 다양한 명칭이 병존한다. 이는 조약의 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학계에서는 ‘협약’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학계에서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최덕수 외(2010),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p. 635].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을사조약’을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흔히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 혹은 동조한 5명의 대신(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결까지 했다. 파장은 당대에 그치지 않았다. 을사조약을 비롯해 당시 체결된 조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지점 중 하나였고,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사회의 역사인식이 분기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대한 사건인 만큼, 을사조약과 관련한 연구는 1960년대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을사조약 자체를 다루기보다 주로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 혹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팽창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조명했다.³⁾ 을사조약체결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였다. 당시 북일국교정상화교섭으로 과거 대한제국 시기 체결된 조약들에 대한 법적 평가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으며, 무엇보다 199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을사조약 원본문서가 대중에 공개되고, 조약의 표제·비준서·위임장이 없는 등 일정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조약체결과정이 주목받기 시작했다.⁴⁾

핵심은 조약체결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혹은 그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는 사실관계의 규명뿐 아니라 효력의 유무를 입증하는 데에도 직결되었기 때문에 한·일 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권중현, 이근택)을 ‘을사오적(乙巳五賊)’, ‘오대신(五大臣)’으로 일컫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조약문 수정요구에 이하영을 비롯해 5명의 대신 이외의 인물들도 관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요구의 주체를 ‘정부대신’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 3) 한국학계의 연구로 李瑄根(1964), 「露日戰爭以後 日帝 對韓政策의 基本方向 — 韓日議定書와 乙巳五條約締結의 經緯 —」, 『사학연구』 18, 한국사학회; 崔永禧(1967), 「露日戰爭前의 韓日密約條約에 對하여」, 『白山學報』 3, 백산학회; 丁原鈺(1969), 「1904·5年 日帝의 大韓外交政策 — 露日開戰에서 乙巳條約까지의 한국외교권 침략문제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21, 한국사학회 등이 있고, 일본학계에서는 山辺健太郎(1966), 『韓國併合小史』, 岩波書店가 대표적이다.
- 4) 康成銀(2002), 「乙巳5條約 研究序論-乙巳5條約研究의 動向と課題」, 『朝鮮大學學報』 5, 朝鮮大學校, pp. 102-103.

벌였다. 여러 쟁점 중 한·일간의 연구가 집중된 문제는 고종의 협상 지시·재가여부였다.⁵⁾ 이 문제는 군주의 동의를 표현하는 비준서와 위임장이 확인되지 않아 촉발된 것으로, 조약체결과정을 기록한 한국과 일본의 사료들을 활용하여 고종의 동의여부를 추정하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때 조약문 수정요구문제가 하나의 근거로서 다뤄졌다.

먼저, 일본학계는 협상과정에서 한국 측 조약문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고종이 협상을 지시했고 조약체결을 재가했다고 주장했다.⁶⁾ 이 주장에는 조약문 수정요구가 고종의 관여 아래 이뤄졌다고 기록한 『일본외교문서』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그리고 「오대신상소문」 등이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⁷⁾ 반면 한국학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먼저 사료들이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다음으로 재가를 하는데 거쳐야 할 국내법 절차가 부재

-
- 5) 다른 쟁점으로 외부대신 직인탈취문제가 있다. 직인탈취는 조약의 무효를 입증할 수 있는 강제성과 관련한 문제로, 『대한계년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을 사조약체결과정을 묘사하는 서술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한국학계는 당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외신보도내용을 근거로 직인탈취를 주장했고, 일본학계는 조약체결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기, 회고록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관련 연구로 윤대원(2013), 『『純宗實記』의 고종시대 인식과 을사늑약의 외부대신 직인 ‘강탈’ 문제』, 『奎章閣』 43; 原田環(2013), 「第二次日韓協約締結時における韓国外部大臣の印章問題について」, 『大韓帝国の保護と併合』(森山茂徳・原田環 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등이 있다.
- 6) 대표적인 연구로 原田環(2004), 「第二次日韓協約調印と大韓帝國皇帝高宗」, 『靑丘學術論集』 24, 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原田環(2008), 「日露戦争と韓国問題—第二次日韓協約の締結をめぐる大韓帝国内の動向」, 『日露戦争と東アジア世界』, 東アジア近代史学会; 海野福寿(2005), 「第二次日韓協約と五大臣上疏」, 『靑丘學術論集』 25, 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등이 있다.
- 7)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録)과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는 일본 측 공문서이며, 조약체결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을사조약 연구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오대신상소문」(五大臣上疏文)은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일자 이완용 등이 고종에게 상주한 상소문으로, 역시 조약체결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된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⁸⁾ 특히 이태진은 조약문 수정요구가 고종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 매수된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두 개의 조약문이 발견되고, 이 중 하나의 조약문 내용을 대신들의 수정요구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⁹⁾

이와 같이 조약문 수정요구문제는 고종의 협상지시·재가여부논의 가운데 일부로 다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초점은 고종을 향했고, 수정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일본 측의 매수를 입증하기 위해 조약문 수정요구의 실체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종협상안설’의 주장처럼 대신들의 수정요구가 무의미한, 매수의 결과물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먼저, 조약체결 이후 일부 대신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은 자신의 자구수정노력을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崔鳴吉)의 행위에 빗댄 한편,¹⁰⁾ 학부대신 이완용은 「오대신상소문」에서 비록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할 때에 이르기까지’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조약의 전문에 삽입되었지만, 그 이전에 외교권 이양의 기간을 한정하기 위해 자신이 노력했음을 밝히고 있다.¹¹⁾

8) 관련 연구로 이태진(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이상찬(2013), 「을사조약 반대상소와 5대신의 반박상소에 나타난 을사조약의 문제점」,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상찬(2007), 「『駐韓日本公使館記錄』과 『日本外交文書』의 을사조약 관련기록의 재검토」, 『奎章閣』 3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康成銀(2011), 「高宗皇帝の一九〇五年韓國保護條約「裁可」問題と條約合法・不法論争の課題」,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9, 朝鮮史研究会 등이 있다.

9) 이태진(2005), 「1905년 「保護條約」에 대한 高宗皇帝의 協商指示說 批判」, 『역사학보』 185, 역사학회.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협상안을 일본 측이 준비했다는 이태진의 주장을 ‘이종협상안설’(異種協商案說)로 부르려고 한다.

10)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3일 잡보 「何其謬妄」.

더욱이, 대신들의 수정요구를 일본 측과 사전에 교감한 결과로 해석한 ‘이종협상안설’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에서 사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협상안을 만들고 정부대신에게 제시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가 탈초·교서하여 활자화한 활자본에 의존했다. 하지만 활자본의 저본인 사진영인본(본 논문에서는 ‘초서체 원본’이라고 부른다.)을 검토하면 두 자료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며,¹²⁾ 기존 연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초서체 원본과 활자본을 서로 비교하여 조약문 수정요구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이종협상안설’이 근거로 하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수록 을사조약 초안을 재검토하여 두 개의 협상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조약안에 대신들의 수정요구가 소급하여 반영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장에서는 조약체결과정 그중 조약문 수정요구문제와 관련된 조문의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3장과 4장에서 ‘이종협상안설’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본 논문이 을사조약체결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1) 『고종실록』 46권, 광무9년 12월 16일 3번째 기사. 17일 어전회의에서 자신이 “또 외교권을 도로 찾는 것은 우리나라에 실지 힘의 유무(有無)와 조만(早晚)에 달렸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 기간을 억지로 정할 수 없지만 모호하게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12) 초서체 원본은 1988년부터 1994년에 걸쳐 국사편찬위원회가 사진본 481책(약 45,000매)으로 제작하여 총 40권으로 영인한 책이고, 활자본은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원자료를 교서·탈초하여 『주한일본공사관기록』(총 28권)으로 간행한 책이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 소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 2020.07.09.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jh.html).

2. 조약체결과정과 조문의 변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을사조약체결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1905년 10월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閣議)를 통해 을사조약체결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다. 조약체결을 위한 대책을 다룬 8개의 결정 중 제1항이 '별지와 같은 조약을 한국 정부와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관계를 전연 우리 수중에 넣을 것'이었는데, 이때 별지의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의 초안이었다.¹³⁾
- ② 전날의 각의 결정과 조약문 초안을 10월 28일 일본 동경(東京)에서 서울로 발신했고,¹⁴⁾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접수했다.¹⁵⁾
- ③ 조약체결의 전권위임은 주한일본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위문한다는 명목으로 11월 2일 추밀원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13) 『日本外交文書』 제38권 1책, 259 10/27, 「韓國保護權確立實行に關する閣議決定の件」, pp. 526-527.

14)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4권, 10/28, 「일본의 對韓 보호권 결행을 위한 준비 요건 훈령」. 기실 초서체 원본에는 이 자료의 제목이 없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 시 내용을 반영하여 제목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활자본의 제목으로 자료를 지칭하고자 한다.

15) 조약문이 정확히 언제 수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10월 28일 동경에서 발신했다는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토 특사가 서울에 도착하여 고종에게 친서를 봉정한 11월 초순 시점에는 조약문을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접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외무성(外務省)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종이에 조약문이 수록되어있다는 점에서 일본 본국에서 직접 작성하여 한국으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05년 일본 본국 외무성에서 발신했던 기밀문서(『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5권 10장에 수록되어 있음)가 대략 5~10일 사이의 간격을 두고 주한일본공사관에 접수된 것을 고려한다면, 본국에서 발신했던 각의 결정과 조약문을 서울에서 수신한 시점을 대략 11월 10일 이전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사로 파견했다.¹⁶⁾

- ④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11월 10일 하야시 공사와 수월을 대동하고 고종을 알현해 친서를 봉정(奉呈)했다.¹⁷⁾
- ⑤ 이후 이토가 재차 고종을 알현하려고 시도했으나 고종이 병환을 이유로 거절했고,¹⁸⁾ 마침내 11월 15일 고종과 이토의 회담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조약체결교섭이 시작됐다.¹⁹⁾
- ⑥ 16일부터 대신들과의 교섭이 진행됐는데, 우선 이토는 외부대신 박제순을 제외한 의정부 대신 7인(참정대신 한규설(韓圭戩), 내부대신 이지용, 법무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전 참정대신이었던 심상훈(沈相薰)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회담하였다.²⁰⁾

한편, 같은 시간 하야시 공사는 일본공사관에서 외부대신 박제순을 따로 만나 조약의 초안을 제시하고 체결을 요구했다. 박제순은 조약체결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²¹⁾

16) 『日本外交文書』 제38권 1책, 231 11/2, 「伊藤候を特派大使として韓國へ御差遣の件」, p. 482.

17) 위의 책, 249 11/29, 「伊藤特派大使 御親翰奉呈始末」, p. 499.

18) 병을 이유로 연기했으나, 10일 친서봉정시점부터 고종이 알현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고종과 정부대신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강성은(2008), 한철호 역, 『1905년 한국보호조약과 식민지 지배책임-역사학과 국제법학의 대화』, 선인, pp. 112-113 참조]. 반면, 이토의 경우 당시 주한미국공사를 비롯한 외국공사, 한국 정부에 파견된 일본인 고문 등을 만나는 등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原田環(2004), 「第二次日韓協約調印と大韓帝國皇帝高宗」, 『靑丘學術論集』 2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団, pp. 150-151 참조].

19) 위의 책, 제38권 1책, 249 11/29, 「伊藤大使內謁見始末」, pp. 499-503.

20) 위의 책, 240 11/16, 「伊藤大使韓國各大臣及元老大臣と談話の要領」, pp. 488-491.

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11/16, 「韓國外交委託協約締結에 의한 韓國外部大臣과의 交渉의 件」.

- ⑦ 17일, 오전 11시 일본공사관에 다시 정부대신들이 소집되었다. 하야시 공사는 조약체결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신들은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여전히 반대했다.²²⁾ 조약체결에 실패하자 하야시 공사는 대신들을 대동하여 입궐하였고, 오후 3시부터 어전회의가 열렸다. 이때 한규설과 박제순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완용과 권중현은 조약을 수정하자는 타협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어전회의 결론은 여전히 조약체결의 반대였다.²³⁾

이러한 반대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후 8시부터 이토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조선주차관 사령관을 비롯하여 군인을 대동하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토와 대신들 간의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협상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이토가 대신 한명 한명을 지목하면서 의견을 묻고, 가부를 자신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규설과 민영기는 반대의견을 굳혔으나 나머지 대신은 묵언 혹은 찬동의 의사를 보여 찬성파로 분류되었다. 이후 찬성파로 분류된 대신들이 요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의 자구 수정을 거쳤고 고종에게 조약문을 상주했다.²⁴⁾

- ⑧ 18일 새벽 1시, 외부대신 박제순과 하야시 공사 사이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체결 시 사용된 도장은 황제의 어보(御寶)가 아니라 외부대신 관인(官印)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가운데 본 논문의 주제인 조약문 수정요구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조문의 변화과정이다. 기록상 총 4군데에서 을사조약의 조문내용이 등장하는데, 첫째, 10월 27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하여 서울로 발신한 을사조약 초안(사실관계 ①), 둘째, 11월 초순

22) 『日本外交文書』 제38권 1책, 249 11/29, 「日韓新協約調印始末」, p. 503.

23) 이완용(1927), 『一堂紀事』(金明秀 편), 一堂記事出版社, pp. 32-35.

24) 『日本外交文書』 제38권 1책, 249 11/29, 「日韓新協約調印始末」, pp. 504-506.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수신한 을사조약 초안(사실관계 ②), 셋째, 11월 16일 하야시 공사가 박제순에게 제시한 을사조약 초안(사실관계 ⑤), 넷째, 11월 17일 을사조약 최종안(사실관계 ⑥)이다. 그리고 각 조약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을사조약 조문의 변화과정

	①	②	③	④
	A (10월 27일)	B (11월 초순)	A' (11월 16일)	B' (11월 17일)
전문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하는 시일까지 (삽입)	A와 동일	B와 동일
1조	전연 스스로	(삭제)		
3조		전히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해 (삽입)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을 보증한다 (삽입)		

① 10월 27일 각의에서 결정된 을사조약 초안(A)²⁵⁾

전문: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이 목적으로 좌의 조관을 약정한다.

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통해 지금부터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전연 스스로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해를 보호한다.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무를 맡고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

25) 『日本外交文書』 제38권 1책, 259 10/27, 「韓國保護權確立實行に關する閣議決定の件」, p. 526.

부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갖는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아니함을 약정한다.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Resident General)을 두고 통감은 경성에 주재하여 친히 한국황제폐하에 내알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그 외에 일본국 정부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땅에 이사관(Resident)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에 종래 재한일본영사에 속하는 일체의 직을 집행하고 함께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조약의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우 증거로서 하명은 각 본국정부로부터 상당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조인한다.

②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수신한 을사조약 초안(B)²⁶⁾

전문: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하는 시일까지 이 목적으로 좌의 조관을 약정한다.

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통해 지금부터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해를 보호한다. (‘전연 스스로’ 삭제)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무를 맡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갖는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아니함을 약정한다.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10/28, 「일본의 對韓 보호권 결행을 위한 준비 요건 훈령」.

의 통감(Resident General)을 두고 전히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해 통감은 경성에 주재하여 친히 한국황제폐하에 내알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그 외에 일본국 정부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땅에 이사관(Resident)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에 종래 재한일본영사에 속하는 일체의 직을 집행하고 함께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조약의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을 보증한다.

우 증거로서 하명은 각 본국정부로부터 상당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조인한다.

③ 11월 16일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제시된 을사조약 초안(A')²⁷⁾ 10월 27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을사조약 초안(A)과 내용이 같다.²⁸⁾

2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11/16, 「을사5조약안의 送交」.

28) 활자본만 본다면 A와 A'가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문서의 초서체 원본에서는 조약문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료 원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조약문의 내용이 활자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영인할 때 관계자료의 출전을 함께 밝히는 과정에서 조약문의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관계자료는 대한제국의 외교문서 중 일본과 관련된 문서를 취합·정리한 『日案』으로, 10월 27일 각의에서 결정된 을사조약 초안(A)과 같은 내용의 조약문이 수록되어있다(『日案』 41책 公文百五十二號 참조). 이는 전날인 15일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조약안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송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보의 내용과도 정합적이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11/15 「伊藤 大使 韓帝 內謁見에 관련 한국정부에 통고 공문에 대하여 미리 결정할 것을 請訓의 件」, 『日本外交文書』 제38권 1책, 239 11/15 「伊藤 大使의 韓帝 內謁見에 關連シ 韓國政府 への 通告 公文에 付豫め 決定方 請訓의

- ④ 11월 17일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 을사조약 최종안(B)²⁹⁾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 수신 을사조약 초안(B)과 내용이 같다.

<표 1>과 같은 조문변화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쉽게 확인된다. 먼저, 같은 내용을 주고받았음에도 10월 27일 본국에서 결정한 초안(A)과 11월 초순 서울에서 수신한 초안(B)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³⁰⁾ 또한 11월 16일 하야시 공사가 한국 측에 제시한 초안(A)은 B가 아니라 A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같은 주체인 주한일본공사관이 본국의 결정을 수신한 내용과 한국 측에 전달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1월 17일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 을사조약 최종안(B)의 내용과 B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우선, 11월 16일 한국 측에 제시된 을사조약 초안(A')과 B'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다. 협상과정에서 조약문에 대한 수정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 17일 시점의 최종안이 1주가량 앞선 11월 초순 시점의 초안과 내용이 같다는 점은 매우 이상해 보인다. 더욱이 11월 17일 협상과정에서 정부대신들이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한 치의 오차 없이 B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³¹⁾

件」, p. 485 참조).

-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4권, 11/18, 「外部大臣 朴齊純과 日本公使 林權助 간 기명 조인된 協約書」; 『日本外交文書』 제38권 1책, 264 11/18 「日韓協約調印濟並に協約全文報告の件」, p. 532.
- 30) A를 기록하고 있는 『日本外交文書』의 저본인 『閣議決定書輯録』 제2권의 「韓國保護權確立實行の件」에서도 A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10월 27일 본국에서 발신한 초안(A)과 11월 초순 서울에서 수신한 초안(B) 사이에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 31) 『日本外交文書』 제38권 1책, 249 11/29, 「日韓新協約調印始末」, p. 506.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전문에 문장을 추가하는 것은 이완용 등, 1조에서 자구를 삭제하는 것은 이하영, 3조에 문장을 추가하는 것은 이완용, 5조를 추가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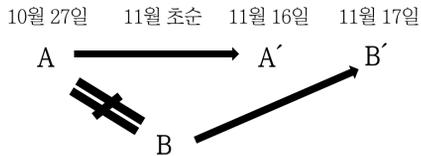
결국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수록된 을사조약 초안(B)의 실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태진의 ‘이중협상안설’에 대해 검토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이중협상안설’에 대한 검토

이태진은 일본 정부가 10월 27일 각의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을 예상하여 4개조와 5개조로 구성된 두 종류의 조약초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수신한 조약문은 그중 하나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완용을 비롯한 정부대신을 매수하여 그로 하여금 협상의 조건으로 발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주장은 일부 다른 연구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³³⁾

다시 말해, A와 B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다른 조약문이기 때문이고, A와 A'가 내용이 서로 같고, B와 B'가 내용이 서로 같은 이유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조약문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이중협상안설’이 사실이라면, 대신들의 수정요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들의 의도



권중현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32) 이태진(2009), 「1905년 ‘보호조약’에 대한 고종황제의 협상지시설 비판」, 『한국 병합과 현대』(이태진·사사가와 노리가즈 편), 태학사, pp. 258-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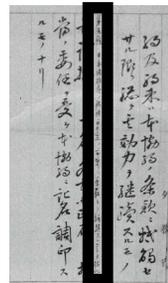
33) 강성은, 앞의 책, pp. 126~127 참조.

속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주를 받고 수정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외교문서』의 「을사조약조인시말」(日韓新協約調印始末) 등 한국 측의 수정요구와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을 기록한 다수의 문건들에 일정한 축소·왜곡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중협상안설’이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활자본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고, 저본인 초서체 원본을 활자본과 함께 검토했을 때 몇 가지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초서체 원본을 탈초해서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원자료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반영하지 않고, 단일한 활자체로 변환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초서체 원본은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수정부분의 글자크기와 나머지 부분의 글자크기가 서로 다른데, 활자본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사진 1]과 [사진 2]에서 상자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삽입된 5조에 대해서 활자본과 초서체 원본이 기술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一切ノ事務ヲ掌理スヘシ
 第四條 日本國ト韓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及約束ハ本協約ノ條款ニ抵觸セサル限り總テ其
 効力ヲ繼續スルモノトス
 第五條 日本國政府ハ韓國皇室ノ安寧ト尊嚴トヲ維持スルコトヲ保證ス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相當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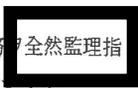


[사진 1] 11월 초순 수신 초안이 수록된 활자본의 5조 (본문과 글자 크기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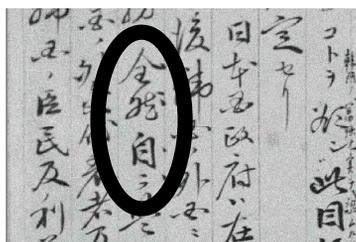
[사진 2] 11월 초순 수신 초안이 수록된 초서체 원본의 5조

둘째, 초서체 원본의 글자 일부가 활자본에서는 누락된 경우가 관찰된다. 대표적으로 1조의 ‘전연 스스로’(全然自ラ)의 사례를 보면, 앞서 소개했듯 활자본에 수록된 11월 초순 을사조약 초안의 1조는 全然만 있고 自ラ가 삭제되어 있는 반면(사진 3), 초서체 원본에는 ‘全然自ラ’가 모두 작성되어 있다(사진 4).

利害共通ノ主義ヲ鞏固ナラシムコトヲ欲シ
以テ左ノ條款ヲ約定セリ
韓國ノ外國ニ對スル關係及事務ヲ全然監理指
於ケル韓國ノ臣民及利益ヲ保護スル



[사진 3] 11월 초순 수신 초안이 수록된 활자본의 1조 일부



[사진 4] 11월 초순 수신 초안이 수록된 초서체 원본의 1조 일부

이러한 활자본과 초서체 원본의 차이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가령, 이태진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조약문 초안을 인용하면서 수정부분과 본문 사이의 글자크기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본문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이를 작성했다. 또한, 활자본에서 누락된 단어인 ‘스스로’(自ラ)를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은 채, 1조를 서술하고 있다.³⁴⁾

하지만 두 자료 간의 차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바로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수신한 을사조약 초안(B)에 10월 27일 각의에서 결정된 을사조약 초안의 내용(A)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위의 [사진 1]과 [사진 2]를 비교해보자. 활자본에서 삽입된 5조와 나머지의 조항들은 병렬적으로 서술되었다면, 초서체 원본에서

34) 이태진(2009), 앞의 논문, pp. 263-264.

는 원래 4조까지 적혀있는 본문에 5조의 내용이 부기(附記)되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5조와 함께 삽입된 전문과 3조의 일부 내용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인다.

한편, [사진 3]과 [사진 4]도 마찬가지로 활자본은 ‘스스로’(自^ㄹ)가 삭제된 채 기술되어 있는 반면, 초서체 원본에서는 ‘전연 스스로’(全然自^ㄹ) 옆에 점을 찍고 있다. 이는 당초 처음 본문을 작성할 때에는 ‘전연 스스로’(全然自^ㄹ)를 모두 적었으나, 수정과정에서 우측에 점을 찍어서 삭제여부를 표시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활자본과 초서체 원본을 비교·검토한 결과, A와 B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수정된 흔적에 해당하며, A가 B의 본문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종협상안설’이 전제하는 것처럼 A와 B가 서로 독립된 협상안이고, 각각 A’와 B’로 이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B는 A를 원본으로 한 상태에서 수정된 부분이 함께 작성된 조약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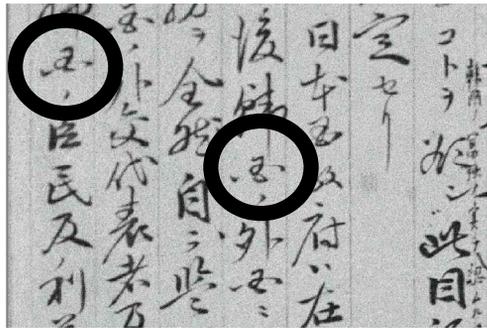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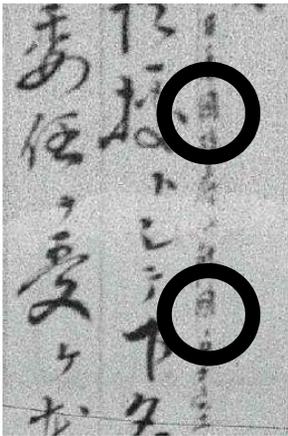
4. 조약문 수정요구와 소급수정된 초안

물론 B가 A의 수정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왜 그리고 언제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수정흔적의 실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가설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첫째,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10월 27일자 각의 결정을 수신하는 시점에 수신자 임의로 원래의 본문 위에 수정부분을 표시했을 가능성이고, 둘째는 ‘이종협상안설’로, 서로 다른 협상안을 하나의 문서에 함께 작성했을 가능성이고, 마지막으로 셋째 11월 초순 이후 시점에서 수정된 부분을 이전의 초안에 반영한 ‘소급수정’의 가능성이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은 11월 초순으로부터 약 1주 뒤에 있을 조약문

수정요구를 미리 예측했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자료의 수정방식, 필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같은 작성자가 동일한 시점에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본문과 수정부분에서 필체가 다른 글자가 보인다. 대표적으로 조약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 중 하나인 國과 事를 꼽을 수 있다. 먼저, 國을 살펴보자. 아래 [사진 5]와 같이 수정요구에 의해 삽입된 5조의 ‘國’은 부수인 口을 쓴 반면, [사진 6]처럼 본문에서의 ‘國’은 간자체로, 모양이 조금 다르다. 5조와 함께 삽입된 전문 역시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인다.



[사진 5] 삽입된 5조의 일부³⁵⁾ [사진 6] 본문 중 1조의 일부³⁶⁾

- 35) 표시된 글자는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을 보증한다.”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 36) 표시된 글자는 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위무성을 통해 지금부터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전연 스스로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해를 보호한다.”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事의 경우 역시 본문과 수정부분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사진 7]과 [사진 8]을 비교하면, 삽입된 3조의 事는 끊어서 글자를 작성한 반면, 본문의 事는 한 붓으로 글자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國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다른 부분을 비교해 봐도 같은 양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 7] 삽입된 3조의 일부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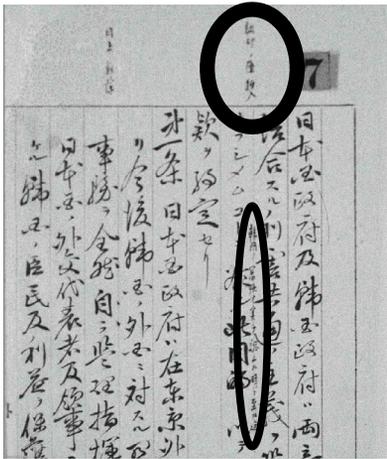


[사진 8] 본문 중 1조의 일부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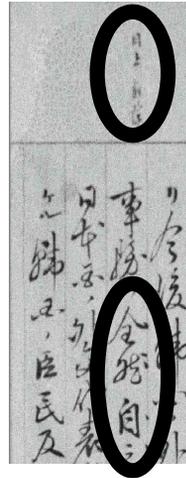
둘째, 수정방식이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

-
- 37) 표시된 글자는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Resident General)을 두고 전히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해 통감은 경성에 주재하여 친히 한국황제폐하에 내알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그 외에 일본국 정부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땅에 이사관(Resident)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에 종래 제한일본영사에 속하는 일체의 직을 집행하고 함께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 38) 표시된 글자는 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통해 지금부터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전연 스스로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해를 보호한다.”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다. 11월 초순에 수신한 을사조약 초안에서 보이는 수정방식은 상단에 내용 삽입/삭제여부를 기입하고 있으며, [사진 9]와 같이 삽입할 때에는 옆에 작은 글씨로 내용을 적고, [사진 10]처럼 삭제의 경우 해당 글자 옆에 점을 찍고 있다.



[사진 9] 삽입된 전문의 수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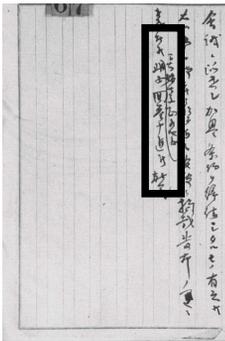
[사진 10] 삭제된 1조의 일부「전연 스스로(全然自ラ)의 수정방식」

그러나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일반적인 수정 혹은 삭제방식은 이와 차이를 보이는데,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삽입표시를 하고 옆에 작은 글씨로 내용을 적고, 삭제 시 위에 줄을 긋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교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각의 결정을 발신한 시점인 10월 28일을 전후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작성된 다른 문서를 보자. [사진 11]은 주한일본공사인 하야시가 작성한 것이고,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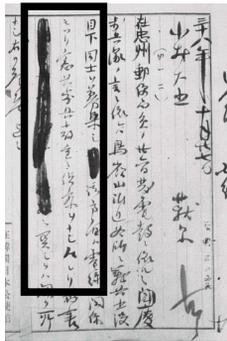
39)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5권, 10/28, 「한국과 제 외국 간의 조약 조사에 관한 건 회신」.

[사진 12]는 은 주한일본공사관 서기관 하기와라 모리이치(萩原守一)가 10월 27일 본국 외무성에 발신한 문서이며,⁴⁰⁾ [사진 13]은 경성우편국장 다나카 지로(田中次郎)가 10월 23일 하기와라에게 보낸 문서이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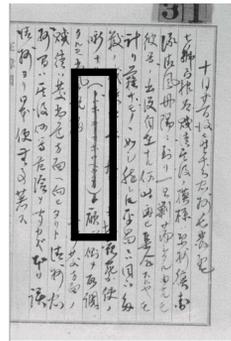
물론 이들 문건 모두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작성해서 본국으로 발신했거나 다른 기관과 주고받은 것이므로 각의 결정을 수신한 문서와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진 14]와 [사진 15]에서 볼 수 있듯,⁴²⁾ 본국의 훈령을 받는 다른 문서들에서도 일반적인 수정방식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11월 초순 수신 을사조약 초안에서의 수정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사진 11] 10월 28일 하야시가 작성한 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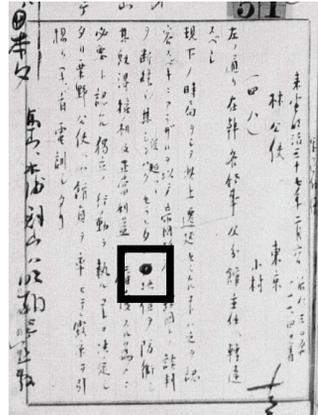


[사진 12] 10월 27일 하기와라가 작성한 문건



[사진 13] 10월 23일 하기와라가 수신한 문건

40)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5권, 10/27, 「鳥嶺부근 각처의 의병출몰 상황 보고 건」.
 41)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6권, 10/23, 「草賊에 관한 件」.
 42)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23권, 01/18, 「彈藥 취급에 관한 件」; 02/06, 「일·러 교섭 단절 通報 件」.



[사진 14] 본국의 훈령을 수신한 문건 ① [사진 15] 본국의 훈령을 수신한 문건 ②

이렇게 편집방식의 차이, 상이한 필체를 고려한다면,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각의 결정을 수신하는 시점에 작성자가 임의로 협상안을 동시에 적은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이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은 ‘이종협상안설’인데, 앞서 3장에서 다뤘듯이 11월 초순 수신된 을사조약 초안이 독립된 협상안이 아니라 10월 27일 각의에서 결정된 초안에 수정을 가한 흔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준비된 두 개의 협상안 중 하나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또한, 일본 측이 사전에 두 개의 협상안을 준비했다는 사료적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세 번째 가설뿐인데, 이는 주한일본공사관에서 본국의 결정을 수신한 11월 초순 이후 시점에 수정된 부분이 11월 초순 수신한 을사조약 초안에 소급해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이다(본 논문에서는 이를 ‘소급수정’으로 부른다). 이는 앞서 두 가설들에서 문제가 된 상이한 필체와 독특한 수정방식, 그리고 본국 결정을 수신한 시점

부터 조약문 수정요구가 이뤄진 시점까지 1주가량의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급수정의 사례가 을사조약 외에도 몇 가지 확인된다는 점에서 유력한 설명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검토할 것인데, 먼저 '제1차 한일협약'의 사례이다. 우선 논의에 앞서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조약은 1904년 8월에 체결됐지만, 그 구상은 이미 3개월 전에 시작됐다. 5월 30일 원로회의와 31일의 내각회의에서 향후 한국의 보호국화 방안을 담은 「대한방침」(對韓方針)과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부문에 대한 고문을 파견하려는 조약체결에 착수했다.⁴³⁾ 이 조약이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다.

본격적인 조약체결과정은 8월에 시작되는데, 8월 4일 당시에도 주한일본공사였던 하야시가 본국으로부터 계획을 실행하라는 훈령을 받고,⁴⁴⁾ 8월 6일 외무대신 이하영에게 조약의 초안을 제시했다.⁴⁵⁾ 조약의 초안은 총 3개항으로 아래와 같다.

-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무감독으로 하여 탁지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일은 모두 그의 의견을 따라 시행할 것.⁴⁶⁾

43) 『日本外交文書』 제37권 1책, 390 05/31, 「對韓方針竝に對韓施設綱領決定の件」, pp. 351-356.

44) 위의 책, 400 8/4, 「對韓經營計畫實施方針の件」, p. 360.

45) 위의 책, 402 8/6, 「韓國政府に財政監督及外交顧問備聘に付交渉」, p. 361.

46) 같은 내용임에도 『日本外交文書』는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것'(其意見ヲ問ヒ施行スヘシ)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駐韓日本公使館記録』에서는 '그의 의견을 따라서 시행할 것'(其意見ヲ詢ヒ施行スヘシ)로 기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 소장하고 있는 조약문과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추밀원문서』(樞密院文書), 『메가타가문서』(目賀田家文書) 등 '제1차 한일협약'이

-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삼아 외부에 용빙할 것.
- ③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 혹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일본 정부의 대표자와 협의할 것.

12일 하야시는 고종을 알현하여 조약체결을 재차 요구하였는데, 당시 참정대신 심상훈과 탁지부대신 박정양(朴定陽)이 ‘재무감독’이라는 표현에 대해 반대하고 ‘재무고문’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⁴⁷⁾ 또한, 여러 대신들이 조약의 3항에 반대했다.⁴⁸⁾이에 하야시 공사는 19일 본국에 ‘감독’을 ‘고문’으로 개칭할 것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일에 본래의 3항이 아니라 2항만 먼저 이하영, 박정양과 체결했다.⁴⁹⁾ 그리고 하야시는 남은 제3항에 대해서도 22일 무관과 서기관을 대동하고 고종을 알현해 재가를 요구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23일 외부대신서리 윤치호(尹致昊)를 파견하여 3항에 대한 동의를 표하면서 총 3개항의 조약이 체결된다. 이때 한국은 ‘대표자’ 단어의 삭제를 요구했는데, 일본 측에 받아들여졌고, 아래와 같은 최종 조약문이 완성됐다.

-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무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일은 모두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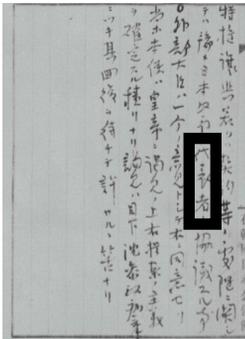
수록된 다른 문서들에서 問이 아니라 詢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詢이 바른 표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 47) 『日本外交文書』 제37권 1책, 406 8/18, 「財政監督の名稱を財務顧問と變更方韓國側より希望申出の件」, pp. 362-363.
- 48) 위의 책, 407 8/19, 「韓國が重要外交案件に付日本代表者との協議を約する條項に對し韓國要人反對の件」, p. 363.
- 49) 위의 책, 408 8/20, 「韓國財務及外交顧問備聘に關する日韓覺書調印の件」, pp. 363-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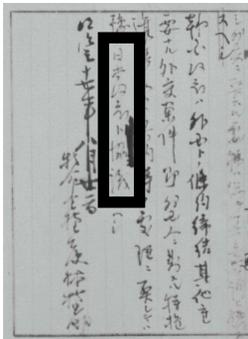
의견을 따라 시행할 것.

-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서 외부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 업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따라 시행할 것.
- ③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 혹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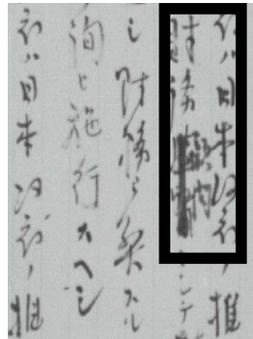
이상의 조약체결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수정요구는 두 차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일 하야시가 고종을 알현한 이후 ‘재무감독’을 ‘재무고문’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과 23일 제3항에서 ‘대표자’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래 [사진 17]에서 볼 수 있듯, 을사조약과 마찬가지로 ‘제1차 한일협약’의 경우에도 초서체 원본에 수정요구가 반영된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 16] 8월 6일 하야시가가 제시한 ‘제1차 한일협약’ 초안 중 3항 부분⁵⁰⁾



[사진 17] 8월 12일 하야시가가 고종을 알현하면서 제시한 조약안 중 3항 부분⁵¹⁾



[사진 18] 8월 12일 하야시가가 제시한 조약안 중 1항 일부⁵²⁾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진 17]에서 소급수정된 부분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먼저 [사진 16]은 ‘제1차 한일협약’ 초안 중 3항에 해당하는 데,⁵³⁾ 상자로 표시된 부분에서 볼 수 있듯 ‘대표자’(代表者)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8월 12일 하야시가 제시한 조약안으로 보이는 [사진 17]의 상자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대표자’가 삭제된 채, ‘일본 정부와 협의’로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이는 앞서 언급했듯, 8월 23일 시점에 한국 측의 수정요구가 반영된 내용으로, 소급수정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진 18]에서 ‘재무감독’이 19일 시점에 반영된 ‘재무고문’으로 수정되어있는 부분 역시 소급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취극서’(이하 ‘취극서’)이다. 앞과 마찬가지로 논의를 위해 조약체결과정부터 살펴보면, ‘취극서’ 역시 ‘제1차 한일협약’과 동일하게 「대한방침」(對韓方針)과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중 통신기관을 장악해야한다는 결정에 따라 착수된 협정이다. 특히, ‘취극서’는 한국의 관영사업이었던 우편,

50) 표시된 글자는 초안의 3항,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 혹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일본 정부의 **대표자**와 협의할 것.”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51) 표시된 글자는 최종 조약문의 3항,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 혹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52) 표시된 글자는 초안의 1항,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무감독**으로 하여 탁지부에 용병하고, 재무에 관한 일은 모두 그의 의견을 따라 시행할 것.”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5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2권, 08/06, 「한국 정부에 財務監督 및 外交顧問 備聘에 관한 교섭 件」.

54) 위의 책, 08/12, 「한국의 중요 외교 안건에 대하여 일본대표자와의 사전 협의 조항에 한국 要人 반대 件」. 물론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상자로 표시된 부분을 다시 보면 ‘대표자’는 이미 본문에는 없고 행간에 ‘대표자’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만 있다. 그러나 뒤이어 이어지는 한글본을 보면, ‘대표자’가 분명히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신사업을 ‘위탁’의 명목으로 일본에 이양시킨, 행정권 이양의 초기 예라고 할 수 있다.⁵⁵⁾

당초 하야시 공사는 1905년 2월에 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고종과 정부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후에도 일본은 거듭 체결을 요구했고,⁵⁶⁾ 3월 30일 하야시가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회의를 열어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선에서 ‘취극서’ 조인을 결정했다. 이때 한국 측에서 수정요구한 부분은 크게 4가지였는데(뒷장의 최종안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 첫째 1조 ‘전화사업’ 아래 ()를 넣어서 ‘공내부 전속의 전화를 제외’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것, 둘째, 3조의 ‘및 도로’의 3자를 삭제하고 ‘국유의 토지 및 건물’로 수정하는 것, 셋째 4조의 3항으로 ‘일본국정부는 통신기관의 관리에 관한 재정 상황을 한국정부에 공시할 것’을 삽입하고, 넷째 6조에서 ‘범위에서’ 아래 ‘현재의’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것이었다.⁵⁷⁾

다음날인 3월 31일 하야시가 본국으로부터 수정훈령을 받았는데,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3가지의 수정을 명령했다. 첫째, 전문의 마지막 부분을 ‘각 상당한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로 수정하는 것, 둘째 1조 말문 ‘할 일’을 ‘할 것’으로 수정하는 것, 셋째, 취극서 전체에 걸쳐 ‘일본정부’라고 한 것을 모두 ‘일본국정부’로 수정하는 것이었다.⁵⁸⁾ 그리고 4월 1일 한국 측과 일본 측의 수정요구를 모두 반영한 최종 협정이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다.⁵⁹⁾

55) 운노 후큐주(2008), 정재정 역,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p. 177.

5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일자 불명,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奏稟 奏稿 裁 上奏文」; 03/21,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제안 보고 件」.

5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03/30, 「통신기관 위탁문제에 관한 請訓 件」.

5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03/31,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回訓 件」.

5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04/01, 「통신기관에 대한 韓日協定書 조인 件」.

전문: 日·韓 양국 정부는 한국의 통신기관을 정비하여 일본국의 통신기관과 합동연락해서 양국공통의 한 조직으로 함으로써 한국의 행정상 그리고 경제상에도 유리한 방책이 되며,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한국의 우편·전신·전화 사업을 일본국정부의 관리 하에 위탁할 필요를 인정하고 대일본제국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및 대한제국 외부대신 이하영은 각 상당한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한국정부는 그 국내에서의 우편전신 및 전화사업(국내부 전속의 전화를 제외) 관리를 일본국정부에 위탁할 것.

제2조 한국정부의 기설 통신사업에 관련된 토지, 건물, 기구, 기계 기타 일체의 설비는 본 협약에 의하여 일본국정부의 보관으로 옮기기로 함. 전항의 토지, 건물 기타의 설비에 관해서는 양국의 관원이 회동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함으로써 훗날의 증거로 삼을 것.

제3조 한국의 통신기관 확장을 위하여 일본국정부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국유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고, 또한 개인의 사유 토지건물은 이것을 유상으로 수용할 수 있음.

제4조 통신기관의 관리 및 재산의 보관에 관해서 일본국정부는 자체의 경비로서 선량한 관리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 통신기관의 확장에 필요한 비용도 역시 일본국정부가 부담할 것.

일본국정부는 통신기관의 관리에 관한 재정상황을 한국 정부에 공시할 것.

제5조 일본국정부가 통신기관의 관리 또는 확장 상 필요로 하는 설비 및 물건은 일체 과세를 면제하게 할 것.

제6조 일본국정부의 관리권 및 사무확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통신원을 존치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임의로 할 것. 일본국정부는 관리 및 확장의 업무에 관하여 되도록 많은 한국관리 또는 사용인을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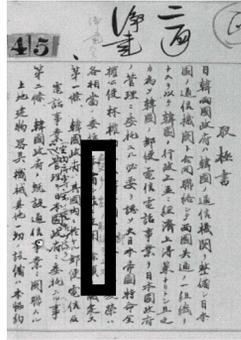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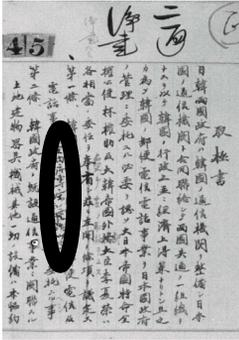
제7조~10조 (생략)

<표 2> ‘취극서’의 조문변화과정

	3월 21일 (주한일본공사관에서 한국 측에 제시)	3월 30일 (한국 측 수정요구)	3월 31일 (일본 측 수정훈령)
전문			각 상당한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삽입)
1조	전화사업 관리를 위탁할 일.	전화사업 관리를(궁내부 전속의 전화를 제외) 위탁할 일 (삽입)	전화사업 관리를(궁내부 전속의 전화를 제외) 위탁할 것 (수정)
3조	국유 토지건물 및 도로	국유 및 토지 및 건물 (삭제)	
4조		일본국정부는 통신기관의 관리에 관한 재정상황을 한국정부에 공시할 것. (삽입)	
6조	범위에서	범위에서 현재의 (삽입)	

위의 <표 2>와 같이 ‘취극서’의 체결과정에서도 여러 수정요구들이 존재했다. 또한, 초서체 원본을 살펴보면 소급수정방식이 활용됐음을 알 수 있다. 뒷장의 [사진 19]-[사진 21]은 모두 3월 30일자 ‘취극서(안)’인데, 한국 측의 수정요구 4가지가 반영됨과 함께, 다음날인 31일 본국으로부터 수신한 수정훈령의 3가지가 반영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전문과 1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 19-1~3]부터 보면, 1조에 ‘궁내부 전속의 전화를 제외’라는 한국 측 수정요구가 반영되어있는 한편(사진 19-1, 동그라미로 표시), 전문에 ‘각 상당한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중 ‘받아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가 수정되어 있고(사진 19-2, 상자로 표시) 1조의 ‘할 일’이 ‘할 것’으로 수정되어 있다는 점에서(사진 19-3, 상자로 표시) 일본 측 수정훈령은 소급해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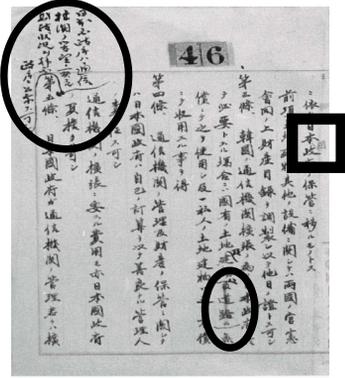
[사진 19-1] 전문과 1조 한국 [사진 19-2] 전문과 1조 일본 [사진 19-3] 1조 일부⁶⁰⁾
 측 수정요구 측 수정요구(소급수정)

다음으로 [사진 20]의 표시된 부분을 보면 3조의 ‘및 도로’의 3자를 삭제하고, 4조의 3항으로 ‘일본국정부는 통신기관의 관리에 관한 재정 상황을 한국정부에 공시할 것’을 삽입하는 한국 측의 수정요구가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1]도 마찬가지로 6조에서 ‘현재의’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요구가 반영되었다.⁶¹⁾ 그리고 흐릿하지만 [사진 20]과 [사진 21]에서 상자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우측 상단부에 國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 본국의 훈령 내용과 동일하며 역시 소급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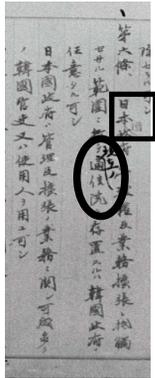
종합하면,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수신한 을사조약 초안에서 나타나는 수정흔적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수신 시점에 수정을 했거나 사전에 준비된 두 개의 협상안을 기록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가설은 사료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60) 표시된 부분은 최종안 1조, “한국정부는 그 국내에서의 우편전신 및 전화사업 (국내부 전속의 전화를 제외) 관리를 일본국정부에 위탁할 것.”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6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4권, 03/30, 「통신기관 위탁문제에 관한 請訓 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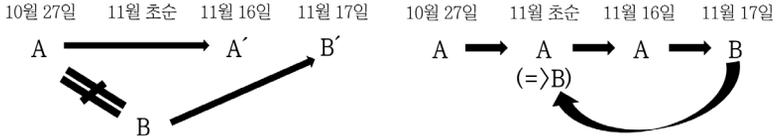
[사진 20] 3조와 4조



[사진 21] 6조

상이한 필체, 독특한 수정방식을 고려했을 때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세 번째, 11월 초순 이후의 시점에서 수정된 사항을 11월 초순 수신 을사조약 초안에 소급해서 반영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고, 이는 ‘제1차 한일협약’,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취극서’의 경우 역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다.

따라서 조약문 수정요구문제의 발단이었던, ① 10월 27일 각의에서 결정된 을사조약 초안(A)과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수신한 을사조약 초안(B)이 차이를 보이는 점, ② 11월 초순 수신 을사조약 초안(B)이 11월 17일 을사조약 최종안(B')과 동일하다는 점은, 기존의 ‘이종협상안설’에서 말하는 것처럼(그림 2-1, 앞의 그림 1과 동일), A와 B가 독립적으로 준비되었고 이것이 A'와 B'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 2-2]와 같이 본국에서 발신한 A가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수신한 시점, 11월 16일 한국 측에 초안을 제시하는 시점까지 이어졌다가 11월 17일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을 소급해서 반영하면서 비로소 A에서 B로 변화한 것임을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림 2-1] '이중협상안설'

[그림 2-2] 소급수정의 경우

[그림 2] '이중협상안설'과 소급수정 간 비교

5. 맺음말

10월 27일 일본 각의 결정으로 시작된 을사조약체결과정은 11월 18일 새벽 조인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교섭이 있었다. 군사적 위협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협상과정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11월 15일 고종과 이토의 회담부터 18일 조인시점까지 조약체결을 놓고 한·일 양국, 그리고 한국 대신들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교차했다.

조약체결과정을 다룬 기존 연구는 교섭과정의 처음과 끝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고 할 수 있다. 고종과 이토의 회담, 조약문 조인사실을 두고 최고결정권자인 고종의 의사를 추정하는 문제가 불거졌고, 직인의 탈취 등 조인과정에서의 하자유무를 두고 한국학계와 일본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정작 교섭과정의 중간, 곧 대한제국 정부대신과 일본 측 간의 의견교환내용, 그중 조약문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대신들의 수정요구는 고종의 지시가 반영된 결과임을 입증하거나 일본 측이 정부대신을 매수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 나타난 의문점들을 근거로 일본과 사전에 교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들의 수정요구가 이뤄졌다는

‘이종협상안설’을 제기하면서, 일본 측의 매수가 있었음을 확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약체결 이후 대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정요구노력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종협상안설’과 같이 협상과정에서 존재한 조약문 수정요구의 실체를 부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기존 설명이 근거로 하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활자본과 저본인 초서체 원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종협상안설’을 검토하면서 조약문 수정요구문제를 다뤘다.

‘이종협상안설’은 11월 초순 주한일본공사관에서 각의 결정을 수신할 때 기록된 을사조약 초안이 실제 각의에서 결정된 초안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11월 17일 시점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사전에 두 개의 협상을 준비했고 이를 한국 측의 반응에 따라 제시했다고 해석하여 의문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료의 원본을 살펴보면, 수정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개의 초안이 상이한 협상안이라기보다 하나의 초안이 수정된 것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정된 흔적에서 상이한 필체와 독특한 수정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 일본 측이 두 개의 협상안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를 11월 초순 시점에 수신자 임의로 수정하거나 별개의 협상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시점에서 발생한 수정사항을 소급해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1차 한일협약’,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취극서’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수정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급수정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11월 초순 수신 을사조약 초안은 ‘이종협상안설’이 전제하듯 두 개의 협상안이 아니라 수정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시 수정요구가 11월 17일 대신들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 을사조약체결과정에서 대신들의 수정요구는 존재했으며, 최종적인 조약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설명이 한계를 노출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자료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활자본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소급수정의 사례와 같이 초서체 원본은 활자본과 달리 사건의 흐름, 정책의 변화 등 당시의 생생한 역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초서체 원본의 검토 역시 중요하지만, 두 자료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자료의 문제와 함께 관점의 차이 역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을사조약체결과정에 대한 관심은 조약의 효력을 검증하는 데에서 촉발됐다. 따라서 조약체결과정 중에서도 고종의 재가, 직인의 탈취 등 조약체결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조약문 수정요구를 비롯해 그 밖의 조약체결과정 속 장면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또한 조약체결과정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본 논문에서 다룬 조약문 수정요구문제는 조약체결과정에서 조문의 내용이 변화해간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추후에 조약문 수정요구문제 외에도 조약체결과정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재조명하고, 규명하는 시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밝혔듯 조약문의 수정요구가 협상 이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협상의 막바지인 17일에 제기되었다면, 곧바로 대신들이 어떤 사정 속에서 해당 시점에 이르러 수정요구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당시 최고결정권자인 고종과 무력을 동원

한 일본 측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정부대신들이 조약체결에 이르게 되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조약체결 당시 역사상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풀어야 할 한 가지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고종실록』.
『日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日本外交文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閣議決定書輯錄』, 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 소장.
『枢密院文書』,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目賀田家文書』,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이완용(1927), 『一堂紀事』(金明秀 편), 一堂記事出版社.
『대한매일신보』.

【논 저】

- 강성은(2008), 한철호 역, 『1905년 한국보호조약과 식민지 지배책임-역사학과 국제법학의 대화』, 신인.
윤노 후규주(2008), 정재정 역,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윤대원(2013), 「『純宗實記』의 고종시대 인식과 을사늑약의 외부대신 직인 ‘강탈’ 문제」, 『奎章閣』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상찬(2013), 「을사조약 반대상소와 5대신의 반박상소에 나타난 을사조약의 문제점」,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_____(2007), 「『駐韓日本公使館記錄』과 『日本外交文書』의 을사조약 관련 기록의 재검토」, 『奎章閣』 3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李瑄根(1964), 「露日戰爭以後 日帝 對韓政策의 基本方向 — 韓日議定書와 乙巳五條約締結의 經緯 —」, 『사학연구』 18, 한국사학회.
이태진(2005), 「1905년 「保護條約」에 대한 高宗皇帝의 協商指示說 批判」, 『역사학보』 185, 역사학회.
_____(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이태진·사사가와 노리가츠 편(2009), 『한국병합과 현대』, 태학사.
丁原鉦(1969), 「1904·5年 日帝의 大韓外交政策 — 露日開戰에서 乙巳條約

- 까지의 한국외교권 침략문제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21, 한국사학회.
- 최덕수 외(2010),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 崔永禧(1967), 「露日戰爭前の韓日密約條約에 對하여」, 『白山學報』 3, 백산학회.
- 康成銀(2011), 「高宗皇帝の一九〇五年韓国保護條約 「裁可」問題と條約合法・不法論争の課題」,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9, 朝鮮史研究会.
- _____(2002), 「乙巳5條約 研究序論-乙巳5條約研究の動向と課題」, 『朝鮮大學學報』 5, 朝鮮大學校.
- 山辺健太郎(1966), 『韓国併合小史』, 岩波書店.
- 原田環(2013), 「第二次日韓協約締結時における韓国外部大臣の印章問題について」, 『大韓帝國的保護と併合』(森山茂徳, 原田環 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_____(2008), 「日露戦争と韓国問題—第二次日韓協約の締結をめぐる大韓帝国内の動向」, 『日露戦争と東アジア世界』, 東アジア近代史学会.
- _____(2004), 「第二次日韓協約調印と大韓帝國皇帝高宗」, 『靑丘學術論集』 24. 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 海野福寿(2005), 「第二次日韓協約と五大臣上疏」, 『靑丘學術論集』 25, 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 「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 소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 2020.07.09.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jh.html.

원고 접수일: 2020년 7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8월 7일

게재 확정일: 2020년 8월 7일

ABSTRACT

A Study o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1905 Convention Treaty:

The Re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on the Revision of the Treaty

An, Seungmin*

Studies o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1905 Convention Treaty ('Eulsa Treaty') have mainly focused on Emperor Gojong, the supreme decision maker of Korea. Related to the conventional research trend, they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treaty, based on the remarks and actions of Emperor Gojong. Nevertheless, there were government officials along with the Emperor at the site of the negotiation. According to the records, they have demanded the revision of the treaty. In most studies, such efforts have been neglected, while this study attempts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revision proposed by government officials, by reviewing 'Ijonghyeopssangan Seol' (the theory of 'two different versions of drafts').

The theory was based on the *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Joseon* (『駐韓日本公使館記録』) Vol. 24 which recorded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05. Regarding the existence of two documents with different content and same title, the theory suggested that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Japanese Government had prepared two different versions of drafts and bribed the officials. However, considering the original record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documents themselves were both original and the revision. Therefore there were not two versions of documents, but only one.

In addition, regarding different handwritings, uniqueness of amendments, and other examples of treaties, the revision would be the result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opinions expressed by the officials. Based on these groun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reaty was revised at the final moment of negotiation process of the 1905 Convention Treaty.

